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30호**

시정권고 재결

2026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6호(어선 도진호 · 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도진호 · 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장**(****. *. **)

울*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진성호가 2024. 12. 1. 05:50경 울산 소재 미포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098도, 거리 약 3.9해리 해상에서 도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진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진성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인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